

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· 운영 행위

자료제공 : 낙동강유역환경청

I. 사건의 개요

1. 사건의 발단

- ▶ 2000. 8. 31.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조업으로 대구광역시 구청에 적발되어 폐쇄명령을 받음과 동시에 1차 고발조치 되었으나 불응하면서 계속 조업함
- ▶ 2000. 12. 29. 행정명령(폐쇄명령) 불이행으로 2차 고발
- ▶ 2001. 7. 20. 행정명령(폐쇄명령) 불이행으로 3차 고발되었으며
- ▶ 2002. 3. 20. 익명의 제보에 의거 낙동강환경감시대 직원이 출동하여, 고발된 대기 배출 시설외에도 추가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을 적발함

2. 수사경위

- ▶ 익명의 제보에 의거, 2002. 3. 20. 현장 점검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등이 추가로 발견되어, 위반확인서를 정구하려 하였으나 날인을 거부하여, 대기환경보전법위반혐의 등으로 입건

3. 수사결과

- ▶ 2002. 4. 18. 관할구청장을 통하여 폐쇄명령을 하였으나, 이를 어기고 계속 조업하는 등 행정명령을 불이행하여, 2002. 5. 28. 검찰에 신병 지휘품신을 받아, 2002. 5. 30. 구속영장을 발부받고, 기소의견으로 송치함.

II. 사건수사 추진일지

- ▶ 2002. 3. 20. 위반업소현장조사, 위반확인서 정구, 증거사진 확보
- ▶ 2002. 3. 29. 자체수사 및 행정처분 의뢰



- ▶ 2002. 4. 10. 현장 단속공무원(대구광역시 구청 환경관리과 소속) 진술확보
- ▶ 2002. 4. 25. "공해배출공장 배짱가동" 제하 신문보도
- ▶ 2002. 4. 30. 출석요구통보
- ▶ 2002. 5. 7. 피의자 신문조서
- ▶ 2002. 5. 7. 범죄인지보고
- ▶ 2002. 5. 21. 범죄경력조회(대구지방검찰청)
- ▶ 2002. 5. 27. 수사결과보고
- ▶ 2002. 5. 28. 신병지휘품신
- ▶ 2002. 5. 28. 현지 재조사
- ▶ 2002. 5. 29. 피의자신문조서(제2회)
- ▶ 2002. 5. 29. 긴급체포, 구속영장신청
- ▶ 2002. 5. 30. 구속전피의자신문, 구속영장발부
- ▶ 2002. 5. 31. 사건송치

III. 범죄사실

피의자 ○은 대구 ○구 ○동 ○소재 금속제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, 같은 주식회사는 금속제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,

- 피의자 ○은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국에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,

1) 1987.년경 대구 ○구 ○동 ○소재 위 회사 공장내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연마 시설 17대(작업장 용적 : 세제곱미터, 1마력 10대, 3마력 5대, 10마력 2대)을 설치한 다음 1998. 1. 1. 부터 2002. 3. 20.경까지 위 같은 공장에서 위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방지시설 없이 조업하고

2) 1987.년경 대구 ○구 ○동 ○소재 위 회사 공장내에 폐수배출시설인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(습식연마시설의 연마기 4대, 폐수발생량 24.96세제곱미터)을 설치한 다음 1998. 1. 1. 부터 2002. 3. 20.경까지 위 같은 공장에서 위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방지시설 없이 조업하고

3) 유독물을 보관 저장 사용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유독물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. 3. 20.위 회사 공장에서 유독물인 메탄올을 정제시설 주입하여 사용하면서 그 정제시설 또는 그 입구에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, 유독물인 메탄올 옥내보관시설인 창고를 설치·사용하면서,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아니하고 그 보관시설 입구에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유독물 보관 저장 사용하는 사업자로서 유독물에 관한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이고

- 같은 주식회사는 피의자의 대표이사인 위 ○이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

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.

IV. 수사결과의 분석 · 평가

1. 총 평

- ▶ 이 건은 1998. 2. 16.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 발대 이후, 영남권 환경특별사법 경찰관서중 최초로 피의자를 구속한 선례인 바, 추후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구속절차 등 의 업무수행에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됨

2. 잘된 점

- ▶ 이 건은 익명의 제보에 의거 현지 확인한 바, 행정관청의 폐쇄명령 및 사법당국의 벌

금형 선고에도 불구하고, 무허가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, 공권력을 경시하며 계속 조업하는 행위를 적발하고 피의자 및 여타 사업경영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, 그와 같은 공권력 도전행위를 엄단(구속)함으로써, 구속사실이 지방신문에 보도되는 등 환경법규 준수 풍토조성에 소기의 성과 달성

3. 미흡한 점

- ▶ 구속에 따른 장비부족(수갑 등) 및 경찰 유치장 시설이용에 따른 일반사법경찰관의 비협조
- ▶ 구속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급양비 및 여비예산 미책정

4. 유사사건 수사시 보완 · 반영할 사항

- ▶ 무허가는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죄를 물을 수 없고 다만 조업혐의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있음
- ▶ 사업자(배출시설허가 · 신고를 한 자)인 경우, 폐쇄명령 불응시 처벌규정이 있으나, 이 건과 같은 무허가시설운영자에 대해 폐쇄명령을 불응해도 처벌규정이 없음.
- ▶ 본 건의 문제점은 보석 출소 후 현재도 조업 중이며,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중이

라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영업범인 조업행위에 처벌할 수 없는 상태이며,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고등법원에 항소 · 대법원에 상고하는 등으로 형의 확정기간을 지연시켜 그동안 벼젓이 조업할 공산이 아주 큼.

V. 참고사항



1. 현장점검시 유의사항

- ▶ 항상 친절·겸손한 태도 견지
- ▶ 환경담당자 등에 신분증 제시 및 지도·점검 목적 고지
- ▶ 사업장 관련 법률 사전재숙지후 점검
 - 법, 시행령, 시행규칙, 고시, 별표 등
- ▶ 가능한 한 사업장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점검
- ▶ 철저한 채증
 - 사진촬영, 관련서류 사본, 채수 등
- ▶ 현장조사 최우선
 - 무단방류 등 환경적으로 위해가 큰 위반사항을 빠른 시간내에 저지하기 위함
- ▶ 2차적으로 환경관계서류 등 조사
 - 허가증, 신고필증 완비여부, 운영일지 검토 등

2. 수사시 유의사항

- ▶ 공소시효 검토
- ▶ 피의자 소환전 범죄사실 가작성
 - 범죄사실에 근거하여 피의자 신문함
- ▶ 미란다원칙 고지
- ▶ 기제출서류(위반확인서, 위법증빙서류 등)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피의자의 회사 것
이 맞는지 재차 확인
- ▶ 기본사항(학력, 가족관계, 병력, 건강상태 등)입력, 검찰청 통계자료로 필요함
- ▶ 피의자 소환전 범죄사실 가작성
 - 범죄사실에 근거하여 피의자 신문함
- ▶ 범죄 일시 및 장소 반드시 기재
 - 6하 원칙 중 가장 중요하며 범죄성립 구성요건의 하나임
- ▶ 범행 방법 확인하여 기재요망
- ▶ 피의자 혐의 부인시 혐의근거에 의한 추궁
- ▶ 피의자 자백 외 보강증거 구비여부 확인 - 범죄 성립 구성요건
- ▶ 신문시 가능한 한 법률용어 사용을 피하고 일반용어 사용(사투리포함)
- ▶ 외래어인 경우 부연설명 필요 - 재차 신문하여 반드시 작성
- ▶ 질문은 짧게, 대답은 질문보다 길게 유도할 것
- ▶ 범죄구성요건이 피의자의 답변에서 적시되도록 조서 작성할 것 ↵